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0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2.
3. 회부연월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4(대학언론) ①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대학언론(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의 발행 및 편성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학언론은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신문, 방송국 등 언론기관임. 이들은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활동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령이 아닌 개별대학의 학칙에서 학교가 운영하는 대학언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학언론의 언론자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서강대학교¹⁾, 2021년 숭실대학교²⁾ 등에서 학보사에 대한 탄압, 검열 등이 논란이 된바 있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³⁾가 열린바 있으며, 윤영덕 의원은 학생 자치활동 및 대학언론 보호·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⁴⁾을 발의한바 있음.

법령상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서강대 학보 전면 백지 발행...“학교측이 편집권 침해”, 2019.5.29., 조선일보

2) “학보사 기자들이 교수에게 ‘집단 항명’해 전원 해임했다”...숭실대 ‘학내 언론 탄압’ 논란 확산, 2021.12.9., 경향신문

3) 2022.4.29. 강득구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최

4) 의안번호 제2116239호,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은 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상업적으로 대학 내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대학언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임. 이를 고려했을 때, 대학언론은 포괄적인 언론의 자유를 가지지만,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대학언론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학교가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그 자율성에는 인사·연구·학생선발 및 전형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 관련된 학사, 대학질서 및 대학시설과 재정의 자치가 포함되는바, 대학 내 언론 설치여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은 학내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대학은 자율성을 지닌 기본권의 주체이며, 학생활동은 대학 내에서 자치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대학언론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낮고, 개정안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대학의 자치적인 사항을 국가의 기준에 복속시키는 것은 대학의 자치에 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